

## 산재노동자는 ‘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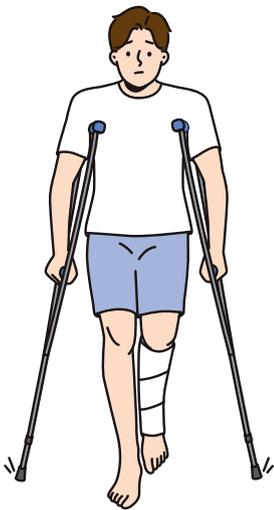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 산재에도 적용되는 ‘추정의 원칙’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사법의 대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설명하는 라틴어다. 여기서 추정(推定)은 배려하거나 추측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확실한 반대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추정을 진실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는 산재에도 적용된다.

‘산재추정의 원칙’은 2017년 12월 26일 법령으로 명문화됐다. 이전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처리 지침이었던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으로 개정된 것으로 작업기간, 노출량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대증거가 없는 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산재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이후 업무상질병 노동자는 빠르게 늘었다. 2018년 1만2,975건이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처리 건수는 지난해 2만8,79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업무상질병이 늘어난 것은 추정의 원칙 도입과 함께 산재요양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영향이 컸다. 노동자가 산재요양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지 않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이런 제도의 개편은 무엇보다 산재 처리 절차를 효율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고시로 승격된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 중 근골격계 부담작업 공정과 작업방법에 사업장별 큰 차이가 없는 분야에 대해 근무기간·유효기간 등을 적용해 복잡한 전문 조사 없이 신속하게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미 해당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져 있고, 해당 업종에서 특정 질병의 위험부담을 확인해 산재를 신청한 자의 대다수가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들에 대해, 또다시 반복 조사를 해서 승인까지의 기간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 ‘산재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

최근 ‘산재 나이롱 환자’가 언론보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재추정의 원칙’과 ‘산재환자 전용 특별수가’ 도입 등이 산재 부정수급자 증가,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감사 인력을 구성해 근로복지공단 특정감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2일 보수 언론들은 이를 ‘나이롱 산재 환자 칼 빼든 노동부’ 제목을 달고 확산했다.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실은 산재 추정의 원칙 등을 문제 삼았다. 국정감사 이전엔 들도 보도 못했던 ‘산재 카르텔’이 대통령실까지 나서야 할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경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최진경 전 삼성전자 연구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필자의 지난달 칼럼 첫머리에 등장하는 바로 그 최진경씨다). 삼성디스플레이(구 삼성전자) 기흥연구소 연구원으로 17년간 일했던 그는 퇴사 후 1년 뒤인 2018년 8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역학조사가 지연되면서 4년을 기다린 끝에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최진경씨는 ‘산재 국가책임제 법안’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병마와 싸우던 그에게 ‘국회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지난 11월 4일 향년 48세 나이로 자신의 산재 소송 결과도 알지 못한 채, 산재 국가책임제 법안 처리도 지켜보지 못한 채 끝내 눈을 감았다.

## ‘산재 카르텔’을 말하는 게 카르텔 아닌가?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마치며 ‘산재 선보장(국가책임제)’ 제도 논의에 첫발을 떼기로 합의했다. 긴 역학조사 기간에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산재 피해 노동자가 숨지는 일을 막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호응한 것이다. 산재 카르텔과 산재 국가책임제는 공존할 수 없다. 국회가 산재 국가책임제를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대통령실은 산재 카르텔을 엄단하겠다고 뜻부터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관리·감독 부실로 (산재보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경우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못 돌아갈 우려가 있다. 소수 약용자에 의한 시스템 교란의 최대 피해자는 현장의 노동 약자들이다.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소수의 부정수급 사례를 앞세워 지금도 높은 업무상질병 인정 문턱을 더 높이려는 기획이야말로 약자 복지 기조에 어긋나는 정·재계 카르텔이 아닐까. 🍷